

#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28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  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□ 개정이유

- 도로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도록 규정하면서 “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위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”는 단서조항이 권리의 남용우려가 있고
- 행위종료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없으므로 권리남용 우려되는 단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리남용 방지
-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삽입 하여 농어촌 도로에도 본 조례를 적용

## □ 주요골자

-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, “다만,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후에 징수할 수 있다”는 단서 조항을 천재지변 또는 원인자의 사망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리 남용 방지
-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삽입 농어촌 도로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

## □ 개정근거

- 행정규제개혁 대상사무 일체정비 계획
- 건설교통부소관 규제개혁법 개정 정비대상지정 개정지시  
(법무 05090-10090. '99. 3. 26)

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

# 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  
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중 동법제67조 다음에 “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”를 삽입한다.

제5조제3호 단서 조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

“다만, 천재지변에 가까운 손해로 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와 원인자의 사망 등으로 선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로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도로의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로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 및 동법 제67조, <u>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</u>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도로의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5조(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) .....</p> <p>1~2 (생략)</p> <p>3.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후에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) .....</p> <p>1~2 (생략)</p> <p>3.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. “<u>다만, 천재지변에 가까운 손괴로 도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와 원인자의 사망 등으로 선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</u>”로 한다.</p>